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와 사례 (V)

글 ·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7. 믹서기 안전성 결여에 의한 어린이 상해배상 요구 건

[사건개요]

2000. 9. 초등학교 1학년인 청구인 딸이 믹서기로 밀크셰이크를 만들기 위해 본체에 칼날을 올려놓고 용기를 잡으려고 하던 중 갑자기 칼날이 회전하여 오른쪽 중지의 힘줄 2개가 끊어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피해자는 사고 후 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충격으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삭이었던 청구인 처는 조기분만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약 2주간 산후조리를 하여야 했음.

청구인은 용기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으면 칼날이 회전되지 않아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제품 결함이라며 치료비 등 300만원을 배상해주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초등학생이 부모가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며 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 동제품은 1998년 본원의 소비자안전국의 안전성 조사에서 용기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날이 회전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위험성이 있어 제조사에 자발적 리콜을 촉구하였던 제품으로 당시 제조사에서 기 유통된 제품에 대

해 적극적으로 리콜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남.

[처리결과]

피해배상 요구액 300만원 중 부모의 자녀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을 상계하여 치료비 120만원 및 위로금 80만원 등 총 200만원을 배상함.

8. 전기매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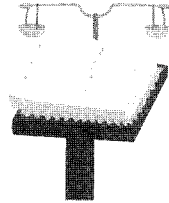
[사건개요]

2000. 10. 23 전기매트를 구입한 다음날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전기매트 상단에서 불이나 침대 매트리스, 침대커버, 이불 3채 등 14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청구인은 결함 있는 제품이 원인이므로 피해 약 140만원과 전기매트 구입가 45,000원의 환불(카드매출 취소)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피해내용도 매트리스는 약간 그을렸고, 침대커버와 이불 3채의 피해는 확인할 수 없다며 60만원만 배상해주거나 동일한 피해물건을 구입해 주겠다고 함.

[처리결과]

청구인이 현금피해배상을 요구하여 100만원을 배상함.



9. 전기히터 과열로 소손된 장판 및 카펫트 배상 요구 건

[사건개요]

청구인은 집안 난방을 위해 전기팬히터를 사용해 오던 중 2001. 12. 12 열선과열로 불이나 거실 카펫트와 전기장판이 타버림.

청구인은 제품결함이 원인이므로 신제품 교환 및 카펫트와 장판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제품만 교환해주고, 카펫트와 장판은 피해가 경미하다며 배상을 거절함.

[처리결과]

제품교환 및 10만원 배상함.

10. 선풍기 화재로 인한 피해 배상요구 건

[사건개요]

2000년 여름 할인점에서 구입한 에어컨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중 갑자기 선풍기에서 불이나, 장판의 일부가 소실되고 연기로 인해 집안 내부가 그을림. 청구인은 장판교체 비용 등 피해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해가 경미하다며 2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함.

[처리결과]

신제품 선풍기 교체 및 50만원 배상함.

11. 헬스기구에 의한 어린이 손가락 절단 상해 배상 요구 건

[사건개요]

2000. 8. 9 케이블 TV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실내용 전신운동용기구인 파워크라프트를 사용 도중 네 살된 아이가 기구에 뛰어 들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은 제품 반품 및 치료비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품을 반품받되 치료비는 배상할 수 없다고 거절함. 소비자보호원에서 동 운동기구를 점검한 결과 실내에서 사용하는 기구임에도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피청구인에게 치료비 일부를 배상해 주도록 권고함.

[처리결과]

치료비의 40%인 750,000원을 배상.

12. 선풍기 회전 날개가 파열되어 입은 상해 배상 요구 건

[사건개요]

청구인은 '99. 8. 7 전자제품 매장에서 선풍기를 구입하여 보름정도 사용하던 중 선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남과 동시에 갑자기 날개파편이 철망 밖으로 튀어나와 왼손바닥을 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음. 청구인은 작동중인 선풍기에 손이나 다른 물체를 대는 등의 외부충격을 전혀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회전중인 선풍기 날개가 외부 충격이 없이 파손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며, 더욱이 선풍기 후방 조립이 헐겁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흔들거리는 후망에 의해 날개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의 조립과실을 주장함.

[처리결과]

명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청구인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병문안 및 위로금 50만원을 지불함.